

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21-116
----------	----------

제 출 자	거창군수
-------	------

1. 제안이유

공공목적의 소방용수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를 면제하여 거창군 소방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수도 사용료 면제 대상 추가(안 별표 7)

- 1) 공공목적의 소방용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수도법」 제38조제1항

나. 예산조치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

라. 기타사항

- 1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- 2) 입법예고: 「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」

제5조에 따라 기간 단축

(가) 예고기간: 2021. 9. 27.~10. 14.

(나)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- 3) 비용추계서: 해당사항 없음

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별표 7의 감면대상란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감면대상	감면율
<u>과. 공공목적의 소방용수</u>	<u>100퍼센트</u>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별표 7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상수도 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